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2항제3호 관련)

1. 뒷면안개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뒷면안개등 1개를 설치할 경우 자동차 중심이나 자동차 수직중심선에서 왼쪽에 설치할 것

2) 높이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뒷면에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와 결합(기준축 방향에서 발광면과 광원은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몸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된 경우 1,2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나. 관측각도

발광면은 상측 5도·하측 5도·외측 25도·내측 2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라. 작동조건

1) 주행빔 전조등 또는 변환빔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만 점등될 수 있는 구조일 것

2)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아래 하나 이상을 적용할 것

가) 후미등 소등 전까지 뒷면안개등은 점등할 수 있으며, 후미등이 재점등되기 전까지 소등이 지속될 것

나) 뒷면안개등의 스위치가 점등위치에서 시동장치가 제거되고 운전석 문이 열린 경우 청각적 경고신호를 제공할 것

4) 피견인자동차의 뒷면안개등이 점등되는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앞면안개등은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일 것

마. 표시장치

점등상태를 알려주는 점등형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바. 추가적인 요구사항

1) 뒷면안개등은 제동등과의 발광면간 설치거리가 100밀리미터를 초과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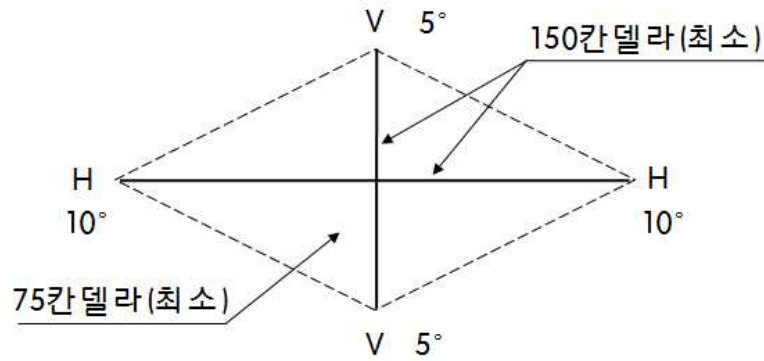
2) 뒷면안개등은 다양한 환경조건 및 발광면의 오염 등에 따라 가변광도 적용이 가능할 것

2. 뒷면안개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광도 : 300칸델라 이하일 것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H-10L~10R	150 이상
V-5U~5D	150 이상
이외의 구역	75 이상



주)

양산자동차 뒷면안개등의 광도기준은 ± 20 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상기 표의 광도기준에 만족해야 한다.